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

2019. 2. 26.



금융보험팀 황기두 팀장

목 차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 어려운 의학 용어
3. 기타(영문약자, 모호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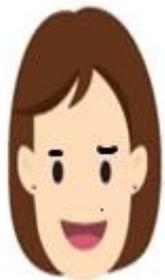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1/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주)

- ▶ 주) 4.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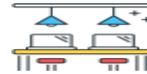
→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일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경과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표시한 것임.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한다고 하는데, 적립순보험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용어해설

총보험료

사업비



회사운영 부분

위험
보험료



위험보장 부분

적립
순보험료



만기시 환급 부분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부표4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 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 ~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이지만 익수나 개구부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용어이므로 일반 소비자는 알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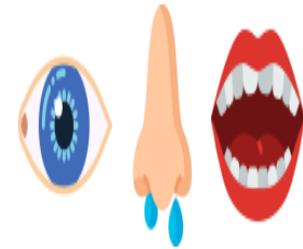
익수

물에 빠짐



개구부

눈, 코, 입 등 신체에
구멍이 있는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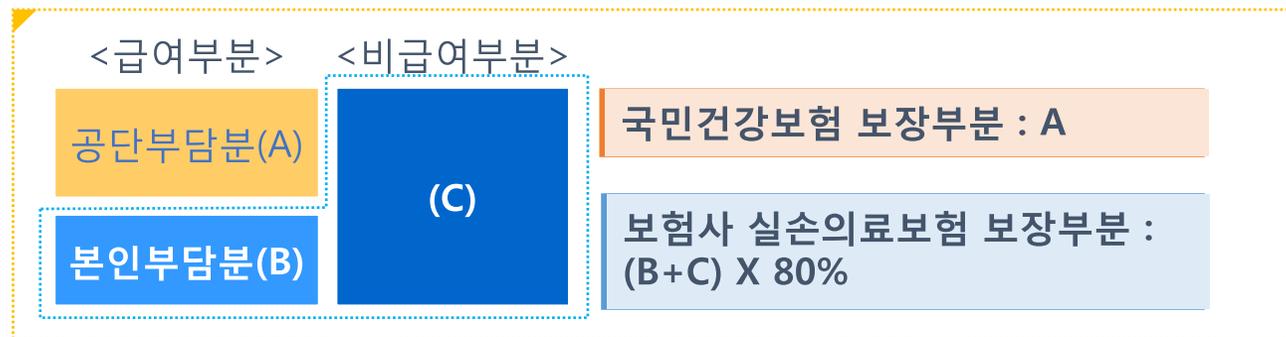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3/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실손보험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상해입원 > 표준형 > 입원실료 등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실손보험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품임. 일반 소비자가 위 내용만 읽어서는 병원비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 진료비영수증 등을 예시로 활용해 **그림, 표**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함.



2. 어려운 의학용어 (1/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장애분류표 > 6. 척추(등뼈)의 장애 > 나. 장애판정 기준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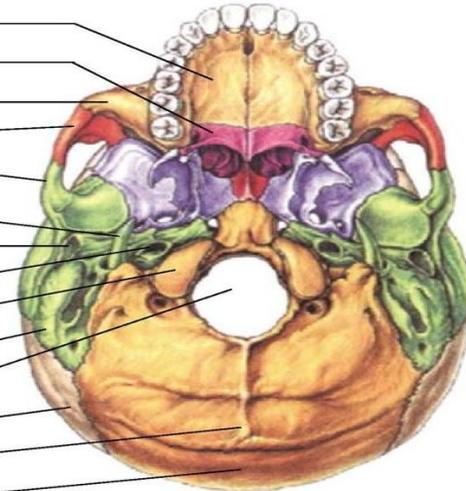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의학용어설명



<대후두공>
두개강과 척추관을
잇는 구멍

상악골구개돌기
구개골수평판
상악골
관골
측두골관골돌기
경상돌기
외이도
경동맥관
후두과
유양돌기
대후두공
두정골
후두골
외후두용기



2. 어려운 의학용어 (2/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장애분류표 > 7. **체간골**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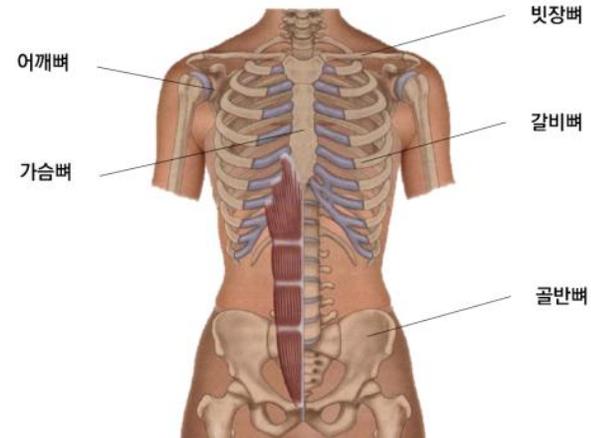
-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의학용어설명



체간골

체간골



2. 어려운 의학용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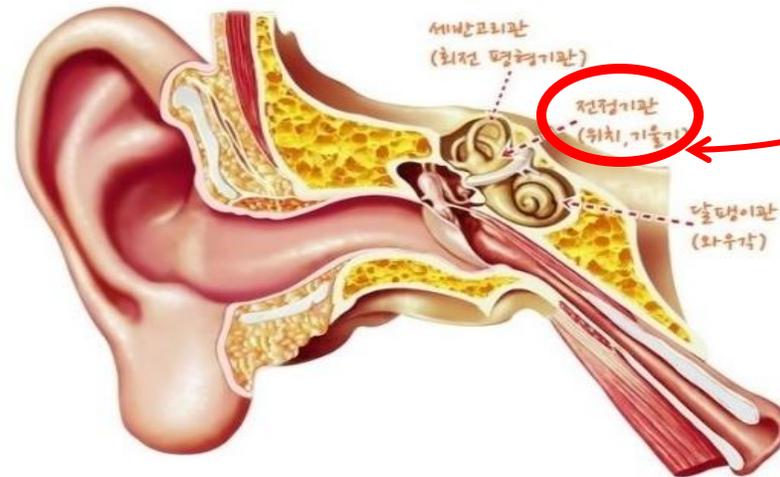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장애분류표 > 2. 귀의 장애

▶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학용어설명



<전정기관>
몸의 균형을 담당
하는 평형기관

3. 기타(영문약자, 모호한 기준) (1/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장애분류표 >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 나. 장애판정기준 > 2) 정신행동

▶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GAF 점수는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개념임.

의학용어설명



GAF ?

정신건강과 관련된
장애등급 판정기준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음

ex) 망각과 환각에 심하게 영향을 받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심하게)해칠 위험이 있음

3. 기타(영문약자, 모호한 기준) (2/2)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생명보험 > 제9조(보험금 받은 방법의 변경)

-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는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계약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